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
| 47~47p 5. ④ | 개념, 공식-설명 | <p>④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,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이사회, 집행 사항들을 감독하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, 집행인인 이사와 감사인인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는 3년, 감사는 2년이다.</p> | <p>④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,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이사회, 집행 사항들을 감독하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, 집행인인 이사와 감사인인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다.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이사의 임기 (상법 제383조)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· 이사의 임기는 경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경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감사의 임기 (상법 제410조)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경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</p> </div> </div> |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